광진구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

광진구체육회 2020년 12월 30일 개정 광진구체육회 2019년 7월 8일 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정」제50조(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)에 의하여 광진구체육회(이하 "체육회"라 한다) 사무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및 직제,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 및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인사 및 직제

- 제2조(사무국)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· 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② 사무국의 조직, 직제, 복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**제3조(사무국장 임용)**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단 시체육회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조직 및 기구)

- ① 사무국 조직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
- 2. 수석부회장
- 3. 부회장

- 4. 사무국장
- 5. 팀장
- 6. 차장
- 7. 직원(생활체육지도자 및 행정직원)
- ② 사무국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.
 - 1. 행정팀<신설 2020.12.30.>
 - 2. 사업1팀(사업)<개정 2020.12.30.>
 - 3. 사업2팀(종목)<개정 2020.12.30..>

제5조(팀별 업무분장) ① 사무국의 각 팀의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. 단, 특별한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팀 간의 업무를 조정<u>하고 담당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</u>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12.30.>

- 1. 행정팀 <신설 2020.12.30.>
- 사무국 예산편성·결산, 운영비, 인건비 집행 등 (은행관련업무-통장개설 및 관리, 이체)
- 이시회 및 총회 운영·관리
- 광진구체육회 규정 및 제 규정 제정 및 개정, 관리
- 국 지원사업(산나는 주말 체육학교,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지원, 기타 등)
-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·관리
-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운영·관리
- 재증명 발급, 임명 표창, 위촉장 관리
- 직인관리 및 사무 인계 인수관리
- 물품차량재산관리 업무
- 기타행정업무(시,구 요청자료, 전자문서관리))
- 홈페이지 운영·관리(체육회 홍보)
- 2. 사업1팀(사업)<개정 2020.12.30.>
- 구 지원 사업(구민체육대회, 체육회 역량강화 교육, 걷기대회, 생활체조교실, 민간 경상보조(체육인의 밤, 캠프)기타 등)
- 시 지원 사업 (전통강습회, 서울형 스포츠클럽, 서울시민체육대축제, 지도자동영상사업,

유소년축구리그 기타 등)

- 대한체육회사업(광진스포츠클럽, 동호회형 스포츠클럽)
- 체육회 역량강화교육 및 단합대회 (시.구.자체)
- 걷기대회(서울시, 구청 년2회)
-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·관리
- 엘리트선수 장학금 지급
- 자원봉사단관리
- 홈페이지 운영·관리
- 그 외 사업관련 업무
- 3. 사업2팀(종목)<개정 2020.12.30.>
- -종목단체 가입, 인준, 승인, 위촉, 임명
- 종목단체 관련 제 규정 제정 및 개정. 관리
- 종목사업계획, 민원
- 총회 운영·관리
- 관리단체 운영위원회 운영·관리 등
- 종목단체 지원 및 관리
- 구청장기, 협회장기 등 대회 지원·관리(의전)
- 동체육회 관리
- 홈페이지 운영·관리
- 그 외 종목관련 업무
 - ② 대직자는 업무담당 부재시 대직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업무에 책임을 진다
 - ③ 대직업무 수행시 업무기간이 1개월이상시 예산범위 내에서 대직업무 수당을 줄
- <u>수 있다</u><신설 2020.12.30.>

제6조(사무국장 업무분장) 사무국장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.

- 1. 체육회 사무국 업무 총괄
- 2. 규정 및 제 규정의 제정 · 개정, 관리에 관한 업무
- 3.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에 관한 업무

- 4. 대한체육회 지원사업 관련 업무
- 5. 서울시체육회 지원사업 관련 업무
- 6. 구 지원사업 관련 업무
- 7.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관리ㆍ지원
- 8.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사업 지도 · 관리
- 9. 구 체육대회 및 걷기대회 개최
- 10.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
- 11. 생활체육 사업 계획수립·시행
- 12. 회장의 지시사항 수행

제7조(임용 자격기준) 사무국장의 신규채용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지 못한다.

- 1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
- 3.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4. 국가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5.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- 6.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정」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
제9조(임용 구비서류)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자 또는 임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이력서 1통
- 2. 최종 학력 증명서 1통
- 3. 주요 경력 증명서 1통
- 4. 건강진단서 1통

- 5. 주민등록등본 1통
- 6. 정보제공동의서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

제 3 장 복 무

- **제10조(성실의 의무)** 사무국장은 법령과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정」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제11조(비밀유지의 의무) 사무국장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겸직금지) ① 사무국장은 체육회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체육회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 -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사무국장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- **제13조(청렴의 의무)** 사무국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,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.
- **제14조(선거운동의 금지)** 사무국장은 법률에 의한 공식선거에 있어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
- 제15조(근무시간) ① 사무국장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
 -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.
 - ③ 회장은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출장과 외출) ① 사무국장이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자체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, 식비, 교통비,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교육 및 연수 추진기관에서 차량 및 숙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,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외출은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총 외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총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제17조(휴일) 사무국장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주휴일
- 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
- 3. 체육회 창립기념일(8월19일)
- 4. 근로자의 날
- 5. 기타 정부 또는 체육회에서 정한 휴일

제18조(휴가) 사무국장의 휴가는 다음과 같다

-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력을 인정하여 기산하며,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. 유급휴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산정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임신한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출산일 후 45일을 포함한 90일간 출산휴가를 준다.
- ④ 병역관계, 법률에 의한 투표,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을 휴가로 한다.
- ⑤ 가정의례와 관련된 다음과 같이 한다. 이 경우 휴가 중의 휴일은 휴가일에 포함하지 않으며,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

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- 1. 결혼 : 본인 결혼 5일, 자녀 결혼 1일
- 2. 사망
 - 1)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: 5일
 - 2) 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: 2일
 - 3)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: 2일
 - 4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: 1일
- 3. 출산 : 배우자 5일
- ⑥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구분하며, 일반병가는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,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를 할 수 있다. 다만,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연차휴가 보상수당)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체육회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가보상 수당을 지급하거나 익년도 연차휴가에 부여하지 못한 일수만큼 가산한다.
- **제20조(준용)** 사무국장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르고,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
제 4 장 보 수

- **제21조(보수 지급일)**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. 다만,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**제22조(기간의 계산)** 사무국장의 보수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제23조(보수의 종류) 보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기본급
- 2. 명절상여금. 기타 제수당 등

제24조(기본급) 사무국장의 월별 기본급은 당해 재직 연도의 국·시·구비의 책정 금액으로 한다.

제25조(명절상여금, 기타 제수당 등) 체육회 예산 또는 구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26조(인건비 정산) 예산과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.

- 1. 인건비는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으며, 미준수시 환수조치 한다.
- 2. 개인부담금 세액은 기본급에서 공제 후 지급하며, 퇴직급여충당금 및 사업자 4대보험 부담금은 관련 사업비에서 지급하되, 추가 부족분 발생시 자체기금에서 지급한다.
- 3.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.

부 칙 [2019. 7. 8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[2020. 12. 30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